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425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양부남・박정현・박지원

이훈기 • 채현일 • 김문수

허 영·박해철·김영환

박균택 · 신정훈 · 전진숙

조계원 · 강유정 · 정준호

박희승 의원(16인)

제안이유

전국민이 한번쯤은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24세에 실종된 아들을 찾기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헤매는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자신의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언론을 통해보도되고 있음.

18세 미만의 아동과는 달리 성인에 대해서는 실종신고가 이루어지 더라도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 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아동과 같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 성이 있음.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유전정보를 기 구축되어 있는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성인 가족의 슬픔을 덜게 하려는 것임.

추가적으로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개인위치 정보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성인이 발견되었을 때 조속한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종 성인의 조속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조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실종성인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 와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부당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규제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축된 유전정보를 기구축되어 있는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실종신고 사실과 신고인 및 신고사항을 실종성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실종성인의 복귀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실종성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실종성인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상담 지원 등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사. 개인위치정보, 이동경로정보, 유전정보 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해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벌칙과 과태료를 규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를 도모하고 생명·신체 및 사생활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실종성인"이란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2.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4.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 2. 실종성인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 3.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 발견 체계 구축 및 운영
- 4.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 5.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6. 제10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영
-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 · 복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종성인의 신고·발견 및 복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종성인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신상정보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신고 접수 및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 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 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종성인이 소재 확인 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차 등록하지 아니한다.
- 제7조(부당신고 금지) 누구든지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

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 단 제공기관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 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 하여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 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의 채취를 실시할 수 있다.
 - 1. 가족으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채취
 - 2. 실종성인이 실종 전에 착용·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에서의 검사대상물의 채취
 -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상정보를 그 가족·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 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성인을 찾기위한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 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② 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 및 변사

- 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계·검색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절차·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을 찾기

-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0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의 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 종성인과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16조(실종성인의 복귀 및 지원)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실종신고 사실과 신고인 및 신고사항을 고지하고, 복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며 그의 동의를 받아 신고인에게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의 정보를 통보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경찰관서로 동행하여실종성인 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발견된 실종성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실종성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외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실종성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심신미약 등 정신상의 이유로 제1

항에 따른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신고인에 대한 통보를 거절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동의, 통보 및 동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 통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제3항에 따른 복귀 절차와 방법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생사가 확인되어 더 이상 실종성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2.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3. 신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4. 신고인이 실종성인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 등록 사항을 해제하는 때에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실종성인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소재 등 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사 및 관련 사항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 부로 유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

- 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 용한 자
-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 2. 제1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실종성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 외의 정보를 알려준 자
- 제20조(과태료) ① 실종성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목적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신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